

2024 년도
회원 모집

2024 년 2 월 1 일(목)부터 예약 접수 시작

교통재해공제 화재공제

한 명당
600 엔
(연간)

교통재해공제

- 사망 위문금 최고 금액 **200** 만엔
- 통원 위문금 최고 금액 **20** 만엔

주 의!

오사카부 자전거조례에서 가입이 의무인
자전거보험이 아닙니다.

한 계약당
600 엔
(연간)

화재공제

- 공제 위문금 최고 금액 **150** 만엔
- 사 망 조 위 금 **100** 만엔

주 의!

지진이나 태풍, 그 외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신청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창구가 없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이나「위문금청구」등의 신청은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전자신청을 이용하시는 분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東大阪市民共済 電子申請

検索

2024 년도 가입신청(예약접수)



※신용카드, iD 결산만 대응

※가입신청의 전자신청 접수기간은

2024 년 3 월 23 일(토)까지 입니다.

그 외의 수속



【전자신청이 가능한 수속】

- 위문금청구 수속
- 회원증기재사항 변경신고
- 회비감면신청(취학원조대상세대)

공제 기간 : 2024 년 4 월 1 일(월)부터 2025 년 3 월 31 일(월)까지

※도중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 신청일 다음날부터 2025 년 3 월 31 일(월)까지

예약 접수 : 2024 년 2 월 1 일(목)부터 2024 년 3 월 29 일(금)까지

접수 창구 : ①각 행정서비스센터 ②시청(5 층)시민생활총무과

③시내의 주요 금융기관 ④전자신청(2024 년 3 월 23 일까지)

※리소나은행, 미츠비시 UFJ 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유우초은행직영점 및 우체국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①각행정서비스센터②시청(5 층)시민생활총무과에서는 4 월 이후에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통재해 공제제도의 개요

가입할 수 있는 분

시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분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비

1인당 1년에 600엔입니다.(단 1인 1계약으로 제한합니다)
 도중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에 따라 회비가 달라집니다. (예: 4월 30일 가입의 경우⇒5월 1일부터 유효함으로 회비는 550엔)

월	예약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회비 (엔)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취학원조세대의 아동·생도는 반드시 각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시청(5층) 시민생활총무과로 말씀하시거나 전자신청으로 회비감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2024년도 취학원조의 인정이 확정된 후 반액분의 감면 안내서를 송부합니다. 연도내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문금 등

구분	급	내 용	금 액
공제위문금	특 1	세대주의 사망(단신 세대주는 제외)	2,000,000 엔
	1	단신 세대주 및 세대원의 사망	1,500,000 엔
	2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180일 이상일 때	200,000 엔
	3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15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120,000 엔
	4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120일 이상 150일 미만일 때	100,000 엔
	5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90일 이상 120일 미만일 때	80,000 엔
	6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60,000 엔
	7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일 때	40,000 엔
	8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20일 이상 30일 미만일 때	30,000 엔
	9	실제로 치료한 일수가 10일 이상 20일 미만일 때	20,000 엔
부가금	1	입원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때	30,000 엔
	2	입원한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20,000 엔
	3	입원한 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일 때	10,000 엔

※교통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예:2024년 4월 1일의 사고의 경우⇒2026년 4월 1일까지 청구가능)
 한 사고당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문금 청구수속

본인이 다음 서류(원본)를 첨부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단, 청구자가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정의 용지는 각 행정서비스센터와 시청(5층)시민생활총무실에 있습니다).또한, 사고를 당한 분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가 청구해 주십시오.

- 회원증 겸 영수증 (전자신청으로 가입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자동차 안전운전센터가 발행하는 교통사고 증명서
- ①②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 (소정의 용지는 각 행정서비스센터와 시청(5층) 시민생활총무과에 있습니다.)

- ① 실제로 치료한 일수와 입원한 일수가 명기된 것.
- ② 사고발생 후 7일 이내에 치료받은 것에 한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의 사고로 공제위문금 10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영수증이나 그외 치료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것도 가능

- 방문하신 분의 본인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망의 경우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청구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 공제위문금 등 청구대표자신고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시민생활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의한 청구 ○신체장애인용 휠체어의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치료 중에 재차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출한 서류가 원본일 경우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문금 등의 지급은 재해를 입은 회원 또는 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융기관명·지점명·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위문금 청구장소

각 행정서비스센터, 시청(5층)시민생활총무과 또는 전자신청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공제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중도가입은 가입한 다음날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회원이 상기 기간 내에 시외로 전출하여도 2025년 3월 31일까지의 공제기간은 유효합니다. 또한 도중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차량(자동차·자전거·이륜자동차·전동 등)을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충돌이나 갑작스러운 추락, 전도 사고, 또는 보행 중 이런 차량에 치이거나 받힌 사고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체 장애인용 휠체어에 의한 사고도 차량과 같은 위문금 등이 지급됩니다.
 단, 철도,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한 사고 및 국외에서 일어난 사고는 위문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문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회원, 공제위문금 등을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
- 회원의 자살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
- 회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재해
- 회원이 시험운전, 경기, 흥행, 훈련 등을 위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 또는 휠체어 등에 탑승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재해
- 가입 자격이 없음이 밝혀질 경우

회원자격, 사고내용, 청구내용에 의의가 발생한 경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조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만일, 협력을 하지 않으실 경우는 위문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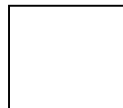
○ 공제위문금은 실제로 입원 및 통원한 일수 (실제로 치료한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특 1급 및 1급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일로 산정합니다.

○ 입원 부가금은 1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입원한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청구서·진단서·임의장 등은 아래의 UR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다운로드
http://www.city.higashiosaka.lg.jp/soshiki/9-1-0-0-0_16.html

자전거의 자손사고(자기신체사고)라도 교통사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고 당일 증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화재공제 제도의 개요

가입할 수 있는 분

시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 세대주 분입니다.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비

1 세대 1 계약 1 년분 600 엔입니다. (단 1 세대당 3 계약을 한도로 합니다)

도중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에 따라 회비가 달라집니다. (예: 4 월 30 일 가입의 경우⇒5 월 1 일부터 유효함으로 회비는 550 엔)

월	예약시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회비 (엔)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위문금 등

구분	급	내 용	금액(1 계약)
공제위문금	1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70% 이상 소실(燒失) 또는 손괴(損壞)	1,500,000 엔
	2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20% 이상 70% 미만 소실 또는 손괴	800,000 엔
	3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10% 이상 20% 미만 소실 또는 손괴	250,000 엔
	4	소화 활동에 따른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50% 이상 침수	120,000 엔
	5	소화 활동에 따른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20% 이상 50% 미만 침수	50,000 엔
	6	대상건물의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또는 손괴	20,000 엔
사망조위금		사망 1 명당(회원 또는 주민표상으로 동일 세대의 친족에 한함)	1,000,000 엔

※화재 등이 발생한 날(사망한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 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2024 년 4 월 1 일에 피해를 입은 경우 2025 년 4 월 1 일까지 청구가능)

위문금 청구수속

세대주가 다음 서류(원본)를 첨부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단, 청구자가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용지는 각 행정서비스센터와 시청 (5 층) 시민생활총무과에 있습니다.)

- 1) 회원증 겸 영수증 (전자신청으로 가입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2) 이재증명서 (소방국장가 발행한 것)
- 3) 방문하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망한 경우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4)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5) 청구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 6) 주민표 사본(세대 전원)
- 7) 공제위문금 등 청구대표자신고

※사망한 경우 그 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시민생활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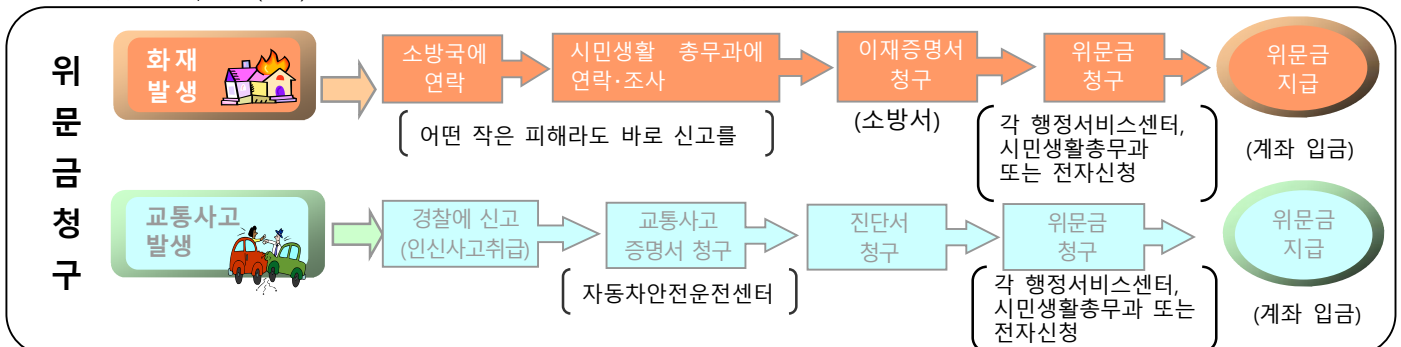
※제출한 서류가 원본일 경우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문금 등의 지급은 세대주 또는 청구자명의로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위문금 청구장소

각 행정서비스센터, 시청(5 층)시민생활총무과 또는 전자신청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다른 민간 회사의 보험 등에 관계없이 위문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른 민간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상세한 내용은 계약한 보험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기간

2024 년 4 월 1 일부터 2025 년 3 월 31 일까지. 중도 가입의 경우는 가입한 다음날부터 2025 년 3 월 31 일까지 입니다. 또한 시외로 전출한 경우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도중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재해 등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지에 가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건물(본인 소유의 집, 임대주택에 관계없이)로 화재, 버락, 가스 등의 폭발에 의한 피해. 이 경우 공장, 창고, 점포, 그 외 건물에 부속되는 문·담·울타리 등 독립된 헛간·차고 및 에어컨, 온수기 등 기구의 단독 피해는 제외합니다. 또한 셋방살이, 하숙의 경우는 1 실당 1 세대로 합니다. 단, 남에게 빌려준 건물(부분)이 피해를 당해도 그 소유자에게 위문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문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1) 회원 또는 회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
- 2) 폭동, 그 밖의 사변에 의한 피해
- 3) 지진, 태풍, 그 밖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 4) 가입 자격이 없음이 밝혀질 경우

- 2 계약에 가입한 경우는 해당금액의 2 배, 3 계약에 가입한 경우는 3 배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급 및 5 급의 피해와 다른 급이 경합하는 경우는, 상급의 피해에 의한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인 분)이 대상 건물의 피해로 인해 화재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화재가 난 경우
피해 크기에 상관없이
당일내로 즉시 소방국에
신고를 !



시민교통재해 공제제도

Q1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나요?

A1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사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교통 사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보행중 넘어져서 골절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이 됩니까?

A2 이 경우는 대상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대상입니다.

Q3 아들이 다른 시로 이사했습니다. 무효가 되나요?

A3 공제기간 중에는 다른 시로 진출해도 교통재해공제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Q4 주차중인 자전거와 보행중 접촉하여 다쳤습니다.

A4 공제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용구라고 주행 중 등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화재 공제제도

교통·화재 공통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는 가입할 수 있습니까?

A1 점포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게에 주거지가 딸려 있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으나, 주거지 부분의 피해만이 대상이 됩니다.

Q2 화재로 가재도구가 타 버렸습니다. 대상이 됩니까?

A2 가재도구만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대상이 안됩니다.

Q3 같은 건물에 두 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까?

A3 주민표의 세대마다 가입·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연의 거주 부분공유 부분을 포함의 피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태풍·호우로 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대상이 됩니까?

Q4 지진이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 본인확인서류는 필요하니까?

가입신청서 기입 방법

Q2. 제출서류는 복사본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2. 원본 외에 보험회사 등의 원본증명이 있는 경우 접수합니다.

令和6年度 東大阪市民 交通災害共済 加入申込書

【金融機関又は受付窓口保管用】 No.11111

住所	東大阪市 荒本北1丁目1番1号	フリガナ	ヒガシオオサカ タロウ	生年月日	大(昭)平令
	電話(06) 4309 - 3000	世帯主	東大阪 太郎		48年 11月 18日

No.	フリガナ		生年月日	会費欄		
	氏名	フリガナ		1口	2口	3口
1	ヒガシオオサカ	タロウ	大(昭)平令 48年 11月 18日	600円	1,200円	1,800円
2	ヒガシオオサカ	ハナコ	大(昭)平令 53年 6月 12日	600円	1,200円	1,800円
3	ヒガシオオサカ	ジロウ	大(昭)平令 12年 2月 17日	2,400円	3,000円	
4	ヒガシオオサカ	ヨシコ	大(昭)平令 14年 5月 27日			
5			大(昭)平令 年 月 日			
会費合計				4,200円		

③화재공제에 가입한 분은 가입한 계약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④교통재해공제에 가입 하실 분은 가입인원수를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통재해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⑦전년도(2023년도)미가입자이신 분 또는 가입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표시해 주십시오.

⑥회비의 합계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금액 정정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⑤세대주를 포함한 교통재해공제에 가입한 전원의 이름, 가타카나,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통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3 장째 용지에도 글씨가 잘 보이도록 볼펜으로 확실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은 별도로 동봉한 가입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회비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시민생활부 시민생활총무과(시청 5층) TEL 06-4309-3158

FAX 06-4309-3812